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유치원운영위 위원직의 결격사유 등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추가〉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2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 목 차 】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유치원운영위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추가 .....   | 3  |
| 2. 개정안 부칙 .....                              | 11 |
| <br>[참고자료 1] 결격사유 관련 현재 결정 사례 .....          | 13 |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학교급별·주체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 | 1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9.

3. 회부연월일 : 2026. 3. 2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 Ⅲ. 검토의견

#### 1. 유치원운영위 위원들의 결격사유 등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추가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조치<sup>1)</sup>를 받은 사람인 이른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p>등) ①・② (생략)</p> <p>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⑤ ~ ⑦ (생략)</p> | <p>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p> <p>-----.</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p> <p>④ -----제3항-----</p> <p>-----.</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sup>2)</sup>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적 실시를 위하여 설치하고,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규칙 개정, 예·결산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그 구성은 5명 이상 11명 이내에서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sup>3)</sup>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에서 배제하고 있음.

###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이는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sup>4)</sup>하되,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위원의 역할<sup>5)</sup>을 고려하여 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려는 취지임.

□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 등 부당 간섭·제한 행위와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악성 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유치원운영위

---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교육에 대한 주민자치 정신을 실현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2005헌마1144 2007. 3. 29.).

5) 가. **결격사유 도입 법안 제안이유**(법률 제17661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나. **유사 현재 결정**(2005헌마1144 2007. 3. 29.)

-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에 의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의미 있는 실현,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을 학교단위책임제로 실현하여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성질상 공공성을 띤 역할을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도 적용.**

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보호자의 자녀가 속한 반을 넘어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현행 결격사유 규정에 포함되어, 위원 위촉이 제한되고 있음.

### [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현황 ]

(단위: 건)

| 침해 주체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br>(1학기)   |
|-------|----------------|----------------|----------------|----------------|------------------|-----------------|
| 전체    | 1,197          | 2,269          | 3,035          | 5,050          | 4,234            | 2,189           |
| 보호자 등 | 116<br>(10%)   | 171<br>(8%)    | 202<br>(7%)    | 353<br>(7%)    | 461<br>(10.9%)   | 189<br>(8.6%)   |
| 학생    | 1,081<br>(90%) | 2,098<br>(92%) | 2,833<br>(93%) | 4,697<br>(93%) | 3,773<br>(89.1%) | 2000<br>(91.4%) |

\*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교원의 교육권 및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결격사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조치의 성격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경우 제재 성격보다는 재발 방지 성격이 강하다는 점, ②유사제 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적 조치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sup>6)</sup>보다 위원의 안정적인 운영 법익이 우선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결격사유 등 기간의 상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받기만 하면 영구히 결격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취지<sup>7)</sup>를 고려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모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 등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보다 높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현행 결격사유에서 그 기간의 상한(2년~20년)을 두고 있음.

셋째, 결격사유 등의 범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sup>8)</sup>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등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치와 달리 위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

6)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46). 따라서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고,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다.(2005헌마1144 2007. 3. 29. ).

7) 헌법재판소는 결격기간을 영구히 또는 장기간 일률적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오고 있음.

8)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약에 대해서도 위원 위촉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격사유 기준인 “필요 최소 규정”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결격사유 등 대상을 “학부모”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등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받은 사람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해당 조치는 “보호자 등” 즉, 보호자 이외의 교육활동 침해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자녀를 둔 교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표”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개정 취지와 달리 “교원 대표”까지 개정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을 교육활동 관련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의안 번호<br>(대표발의)    | 법안명                                             | 주요 내용                                                                                    | 회부일       |
|--------------------|-------------------------------------------------|------------------------------------------------------------------------------------------|-----------|
| 2217619<br>(백승아의원) | 초·중등교육법<br>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u>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u> 결격사유에 포함. | ‘26.3.20. |
| 2217623<br>(백승아의원) | 교원의 지위 향상<br>및 교육활동<br>보호를 위한<br>특별법<br>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u>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u> 함         |           |

## [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 ○ 교육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①1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만으로 모든 자녀의 학교에서 영구히 위원 위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② 확정 판결 전의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확정 판결에 따라 조치 취소 시 조치 효력에 대한 해석상 혼란, 학부모의 명예 실추 등이 우려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가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시·도교육청(경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유치원 운영 건전성 확보 등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현재 미비한바,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단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 개정안 부칙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 개 정 안                                                                                                       |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 부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최초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1호, 2020. 12. 22.)」의 부칙<sup>9)</sup>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1호, 2020. 12. 22.)」과 동일하게 일정한 유예

9)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선고 또는 징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부칙에는 결격 사유의 적용 시점과 달리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바, 불필요한 법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661호, 2020. 12. 22.)」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②이 법 시행 이후 임명(연임·중임 포함)하는 위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87 |

# 참고 1

## 결격사유 관련 현재 결정 사례

| 구분                             | 법률                                         | 사건번호<br>(선고일자)                     | 위헌·불합치 내용                                                                              |
|--------------------------------|--------------------------------------------|------------------------------------|----------------------------------------------------------------------------------------|
| 영구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나목                         | 2020헌마1181<br>(2022.11.24.)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일반직 공무원(또는 부서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헌법불합치) |
|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나목                        |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 2020헌마1605등<br>(2023. 6. 29.)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헌법불합치)          |
|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없이 일률 제한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 등               | 2013헌마575등<br>(2015.12.23.)        | 마약류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20년간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헌법불합치)                      |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2013헌마585등<br>(2016.3.31.)<br>외 2건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교육기관등에 취업을 제한(위헌)                              |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2013헌마585등<br>(2016.3.31.)<br>외 4건 |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을 제한(위헌)                |
|                                |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 2015헌마915<br>(2016.7.28.)          |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위헌)                                        |
|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제17호                     | 2017헌마130등<br>(2018.6.28.)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위헌)                                      |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등                           | 2019헌마813<br>(2022.9.29.)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위헌)                                  |

\* 국회사무처, 헌법과 법제(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2022. 12. 1. 참고

## 참고 2

### 최근 5년간 학교급별·주체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건)

| 학<br>년<br>도 | 유          |                  |    | 초              |                  |     | 중              |                  |       | 고              |                  |       | 특수            |                  |    | 각종          |                  |             | 기타          |                  |   | 합계               |                  |       |
|-------------|------------|------------------|----|----------------|------------------|-----|----------------|------------------|-------|----------------|------------------|-------|---------------|------------------|----|-------------|------------------|-------------|-------------|------------------|---|------------------|------------------|-------|
|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학<br>생           | 보<br>호<br>자<br>등 | 계     |
| '20         |            |                  |    | 50<br>(53%)    | 44<br>(47%)      | 94  | 488<br>(93%)   | 36<br>(7%)       | 524   | 543<br>(94%)   | 36<br>(6%)       | 579   |               |                  |    |             |                  |             |             |                  |   | 1,081<br>(90%)   | 116<br>(10%)     | 1,197 |
| '21         |            |                  |    | 149<br>(69%)   | 67<br>(31%)      | 216 | 1,158<br>(95%) | 64<br>(5%)       | 1,222 | 767<br>(96%)   | 36<br>(4%)       | 803   | 24<br>(86%)   | 4<br>(14%)       | 28 |             |                  |             |             |                  |   | 2,098<br>(92%)   | 171<br>(8%)      | 2,269 |
| '22         | 0<br>(0%)  | 5<br>(100%)      | 5  | 202<br>(70%)   | 85<br>(30%)      | 287 | 1,791<br>(96%) | 71<br>(4%)       | 1,862 | 807<br>(96%)   | 38<br>(4%)       | 845   | 29<br>(91%)   | 3<br>(9%)        | 32 | 4<br>(100%) | 0<br>(0%)        | 4<br>(100%) | 0<br>(0%)   | 0<br>(0%)        | 0 | 2,833<br>(93%)   | 202<br>(7%)      | 3,035 |
| '23         | 1<br>(20%) | 4<br>(80%)       | 5  | 427<br>(77%)   | 156<br>(28%)     | 583 | 2,982<br>(96%) | 126<br>(4%)      | 3,108 | 1,215<br>(96%) | 57<br>(4%)       | 1,272 | 65<br>(89%)   | 8<br>(11%)       | 73 | 7<br>(100%) | 0<br>(0%)        | 7<br>(100%) | 0<br>(0%)   | 2<br>(100%)      | 2 | 4,697<br>(93%)   | 353<br>(7%)      | 5,050 |
| '24         | 0<br>(0%)  | 23<br>(100%)     | 23 | 493<br>(70%)   | 211<br>(30%)     | 704 | 2,350<br>(93%) | 153<br>(6.1%)    | 2,503 | 880<br>(93.4%) | 62<br>(6.6%)     | 942   | 44<br>(80%)   | 11<br>(20%)      | 55 | 4<br>(80%)  | 1<br>(20%)       | 5<br>(100%) | 2<br>(100%) | 0<br>(0%)        | 2 | 3,773<br>(89.1%) | 461<br>(10.9%)   | 4,234 |
| '25<br>합계   | 0<br>(0%)  | 11<br>(100%)     | 11 | 237<br>(74.1%) | 83<br>(25.9%)    | 320 | 1238<br>(96%)  | 52<br>(4%)       | 1290  | 483<br>(92.9%) | 37<br>(7.1%)     | 520   | 35<br>(89.7%) | 4<br>(10.3%)     | 39 | 6<br>(75%)  | 2<br>(25%)       | 8<br>(100%) | 1<br>(100%) | 0<br>(0%)        | 1 | 2000<br>(91.4%)  | 189<br>(8.6%)    | 2,189 |

\* 자료: 교육부

\*\* 21부터 기타 추가, '22부터 유치원 추가 및 기타 학교급을 특수, 각종, 기타로 세분화